

의안번호	제 520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병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#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일

발 의 자 : 임병운 · 황규철 · 이의영 · 김인수 ·  
엄재창 · 임희무 · 박우양 의원(7인)

## 1. 제안 이유

-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‘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7조제1항’ 을 ‘「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’ 로 하고,  
‘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’ 을 ‘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’ 으로 한다.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과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19조(유기식품등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(이하 이 장에서 “인증기관“이라 한다)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,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, 제한, 심사 및 재심사, 인증 변경승인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,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,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

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기식품등“은 “무농약농수산물등“으로 본다.

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,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, 인증기관의 사후관리,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기식품등“은 “무농약농수산물등“으로 본다.